

---

# 「군산시 청년들 청년센터 · 창업센터」 대관 운영 계획

---

군산시 청년들  
GUNSAN YOUTH  
DDEUL  
청년센터 | 창업센터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대관 운영계획

- 청년들은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년전용 공간임
- 최근 비청년과 영리목적 대관요청이 있어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 1 관련규정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5조(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 2 기본방향

- 청년들은 상시 개방 공간이 아닌 목적형 정책 공간으로 운영
- 청년 주체(청년이 주도하는 활동) 또는 청년 대상 활동(청년을 위한 활동)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대관 허용
- 단순 공간대여 및 영리·이익 추구 목적 사용은 제한

## 3 대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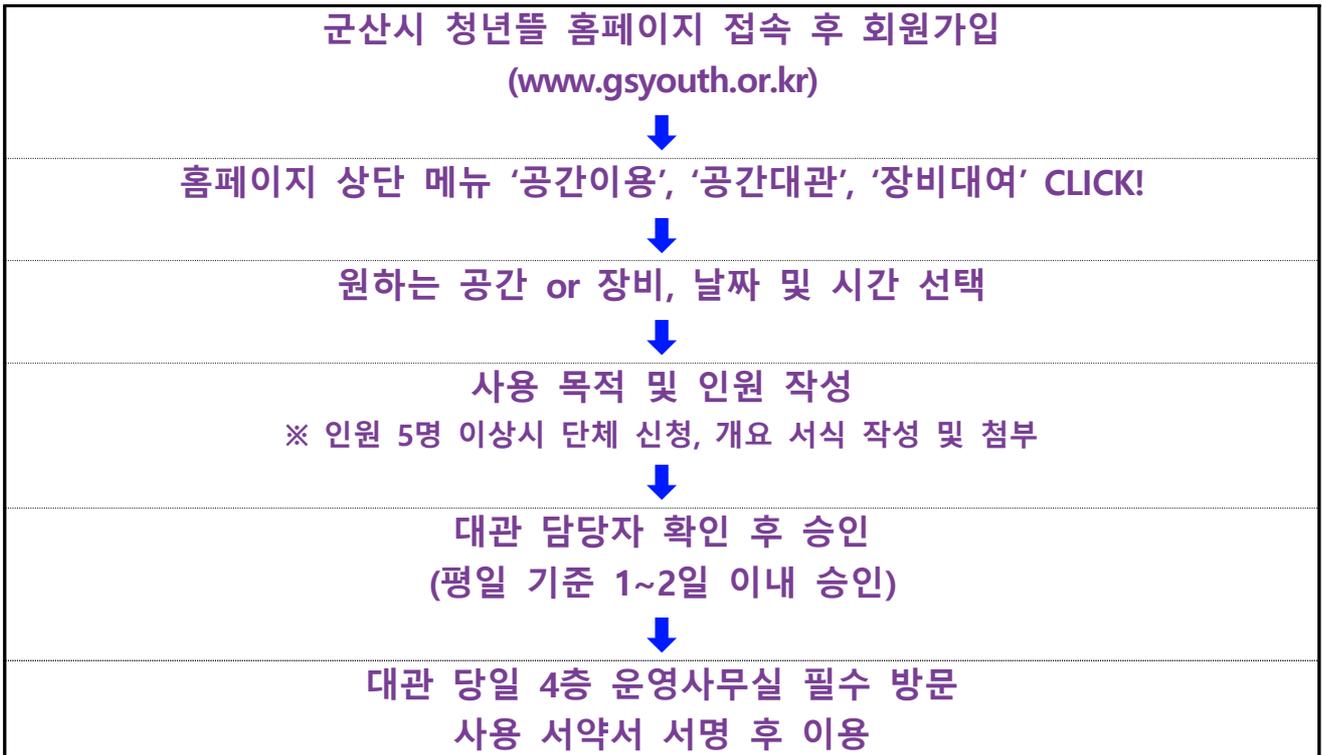
- (대관기간) 연중(근무시간내)
- (대관료) 무료
- (신청기간) 선착순(시간대별)
- (신청방법) 군산시 청년뜰(<https://gsyouth.or.kr/>) 회원가입 후 대관신청
- (시설현황)

3층		
<b>청년강당</b>	<b>IT교육실</b>	<b>세미나실-1, 2</b>
강연 및 다목적 청년공간	4차산업 관련 기술교육	소규모 교육 및 회의
4층		
<b>공유카페</b>	<b>공유주방</b>	<b>사무실</b>
원데이 클래스 및 군산 청년들의 소통공간	식음료 조리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운영 사무공간
5층		
<b>오픈 코워킹스페이스</b>	<b>멀티 스튜디오</b>	<b>레이저 가공실</b>
오픈된 공간으로 청년 네트워킹 공간	제품 및 프로필 촬영	다양한 소재 활용 레이저 가공 공간
<b>코워킹스페이스-1, 2, 3</b>	<b>수제창작 공작실</b>	<b>3D프린터실</b>
청년 및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수제창작(공예), 공동개발 및 제작	다양한 소재 활용 시제품 구현

## 4 세부 대관절차

### □ 일반 신청인(청년 개인, 청년단체, (예비)창업인 등)

- (대관대상) 군산 청년(18~39세) 또는 청년단체, 군산 소재(예비) 창업가
- (대관시설) 청년강당, 세미나실(1,2), IT교육실, 공유카페/공유주방 등
- (신청기간) 선착순(시간대별) ※신청기준으로 한달(30일)까지 예약 가능
- (신청방법) ※(운영시간: 평일 09~21시, 토요일 14~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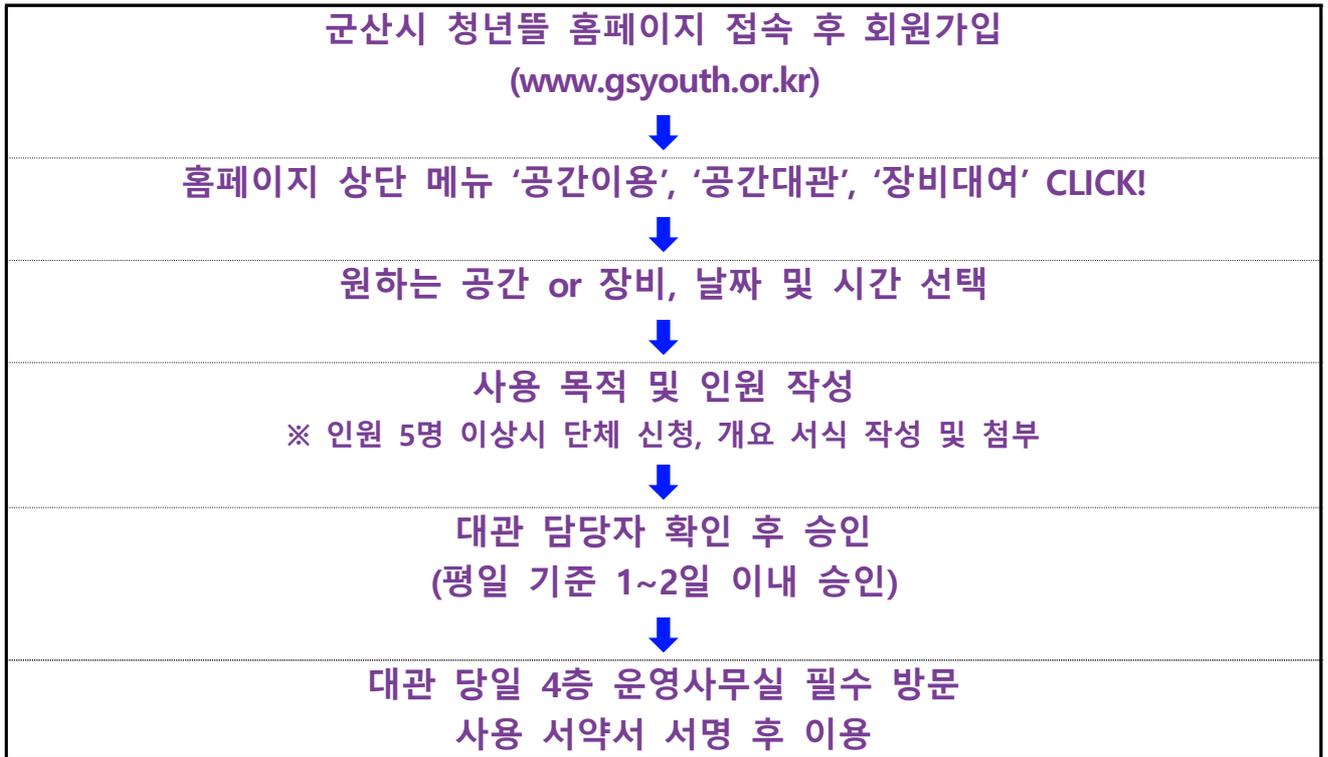


- (대관불가)
  - ① 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기업·단체의 내부회의, 직원교육, 워크숍 등 조직 운영 목적 행사
  - ③ 특정 기업·상품·서비스 홍보, 마케팅, 판매 목적 행사
  - ④ 종교·정당·정치 활동 목적 행사
  - ⑤ 청년정책과 무관한 행사 등 단순 공간 대여 목적
  - ⑥ 군산시 미거주자 또는 관외 단체가 주최·주관하고, 군산 청년의 참여 연계성이 없는 행사

※그 외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인구대응담당관 청년정책계 문의

## □ 군산시 부서가 대관하는 경우

- (대관대상) 주최·주관이 부서인 경우만 가능
- (대관시설) 청년강당, 세미나실(1,2), IT교육실, 공유카페/공유주방 등
- (신청기간) 선착순(시간대별) ※신청기준으로 한달(30일)까지 예약 가능
- (신청방법) **※(운영시간: 평일 09~21시, 토요일 14~18시)**
  - 대관가능 사전문의(인구대응담당관 청년정책계)
  - 공문발송(대관 부서인구대응담당관)
  - 일반 신청인의 대관절차와 동일



- (주의사항) ※모든 대관에 적용됨
  - ① 신청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대관 취소 및 제한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취소 및 제한
  - ③ 대관 예약 후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대관 신청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④ 시설 및 장비 사용이 무료 지원됨에 따라 파손, 사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군산시 청년뜰 창업가 시설 무료 대관 운영 기준(안)

### I. 목적

본 기준은 군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년뜰 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창업 지원 활동에 한하여 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II. 기본 원칙

- 시설은 창업 역량 강화 및 공익적 창업 지원 목적에 한하여 무료 대관한다.
-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영리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시설은 공공자산으로서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의 매출 창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 대관은 창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 III. 대관 가능 대상 (창업가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익 목적 활동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1.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전 단계, 사업계획 수립,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준비 활동 수행자

#### 2.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이내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업에 해당 센터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IV. 허용 활동 범위

순	구분	허용여부	비고
1	창업교육	가능	
2	멘토링	가능	
3	네트워킹 행사	가능	
4	IR·투자설명회	가능	
5	시제품 설명회(비판매)	가능	
6	제품판매	불가	
7	유료강의 운영	불가	
8	참가비 수령 행사	불가	
9	계약 체결 목적 상업 행사	불가	
10	외주용역사 운영 행사(교육포함)	불가	

※ 행사 과정에서 직접·간접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대관 불가

#### V. 제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한다.

- ① 제품·서비스 판매 행위
- ② 참가비·수강료·입장료 등 금전 수령 행위
- ③ 계약 체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상업 행사
- ④ 외부 기업 홍보·판촉 활동
- ⑤ 외주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
- ⑥ 기타 센터장이 수익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VI. 판단 기준

수익 목적 여부는 다음을 종합 고려한다.

- ① 금전 수수 발생 여부
- ② 행사 목적의 직접성
- ③ 매출 증대 목적 명시 여부
- ④ \*공공성 침해 여부

\*군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창업센터의 경우 공공성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것
- 불특정 다수 창업가에게 개방된 기회일 것
- 예산 목적(창업 역량 강화)에 부합할 것
- 세금이 매출 창출 도구로 오해되지 않을 것

판단요소	공공성 유지	공공성 침해
참여대상	누구나 신청가능	특정 기업 단독 행사
수익구조	금전 수수없음	판매·수강료·계약 체결
목적	교육·네트워킹	매출 창출
홍보범위	창업역량강화	특정 브랜드 판촉
혜택귀속	다수 창업가	특정 1개 기업

## VII. 운영 절차

- 대관 신청→활동 목적 기재 및 확인→수익 발생 여부 확인→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 정책적 근거 논리

이 기준은 다음 원칙에 기반한다.

- 지방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
- 공유재산의 공공성 원칙
- 보조금 간접지원에 따른 형평성 확보 필요성
- 공공기관 시설의 사적 이익 제공 금지 원칙